

e편한세상 보라매 2차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특별공급 신청시 유의사항

-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의거, 각 기관별 관계기관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순위 포기 시 차순위에게 기회를 부여하고자 각 타입별 배정세대를 초과하여 추천 명단을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2)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청약접수를 하셔야 합니다.[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3) 재당첨제한,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는 추천기관에서의 선정통보와 무관하게 계약이 불가합니다.
- 4) 본 안내문은 “e편한세상 보라매 2차”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특별공급 신청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자료로 인허가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에 ‘e편한세상’ 홈페이지 (www.daelim-apt.co.kr) 및 주택전시관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개요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917-49번지 일대(대림3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1층 13개동 / 총 859세대 중 일반공급 62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62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62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62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9세대 포함]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모집공고	2018. 02. 27(화)	www.daelim-apt.co.kr
• 주택전시관 개관	2018. 02. 28(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918-56 (신길로 19길)
• 접수일자	2018. 03. 06(화)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인터넷 청약접수 불가)
• 당첨자발표	2018. 03. 06(화)	당사 주택전시관에 게재
• 동호수 발표	2018. 03. 15(목)	당사 주택전시관에 게재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구 분		59A	59B	59C	84A	84B	84C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서울	2	3	1	5	1	4	16
		경기도	1	1	1	3	1	2	9
	국가보훈처 추천 (국가유공자 등)		2	2	2	7	1	4	18
	장기복무군인		1	1	1	2	1	3	9
	중소기업근로자		1	1	1	3	1	3	10
계		7	8	6	20	5	16	62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으로 면적 및 공급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p>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기간,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상호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는 제외)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국가유공자), 3호(국가보훈대상자), 8호(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장애인,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대상자)에 해당 하는 자 중 아래 특별공급별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 ※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에 한해 신청 가능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신청하여야 함. [미접수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불가]

■ 청약 예치금

구 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유의사항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당첨 모두를 무효 처리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결과에 따른 세대 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조정 대상지역”에서 해당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 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구비서류 안내

해당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신청서 등	• 신청일에 신청장소(모델하우스)에 비치
청약통장가입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은행 (중소기업근로자, 군인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및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의 경우
신분증	• 본인 신청시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제출, 배우자 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제출
인감증명서	• 특별공급 신청용 1통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날인

■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비 고
위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양식은 (분양상담실)에 비치]
신청자 인감증명서	• 특별공급 신청 위임용 1통
신청자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날인
대리신청자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음.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주택전시관 위치 및 문의전화



홈 페이지 : www.daelim-apt.co.kr
 주택전시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918-56 (신길로 19길)
 문의전화 : 1566-3551